

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

1. 금융재산 기준

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

단,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

※ 생활준비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

-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

(천 원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금액	8,564	10,199	11,359	12,494	13,556	14,555

*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960천 원 추가

2. 규제의 재검토

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25-211호, 2025. 12. 17.>

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